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기관경고

[제 목] 정기종합감사 태도 불성실

[소 속 기 관]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종목의 발전과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우수한 경기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감사규정」 제3조 제2항¹⁾는 본회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본회 관계단체 등 본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로 정하고 있으며, 협회의 경우 동 규정 제9조 제2항²⁾에 따라 ‘정기감사’의 대상으로, 규정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47조의2 제1항³⁾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종목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다.

- 1) 본회 「감사규정」 제3조(적용범위) ① 본회의 감사업무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② 감사대상기관은 본회 및 “본회 관계단체” 등 본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로 한다.
- 2) 본회 「감사규정」 제9조(감사의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본회는 매년 시군체육회와 도종목단체는 4년에서 5년 주기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11. “생략”
- 3)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47조의 2 ①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종목단체와 시군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감사규정」 제15조⁴⁾에 따라 수감자료에 대한 각 자료에 대하여 감사대상 단체에 수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는 이에 반드시 협조하도록 명시하여 감사인과 수감단체간의 협조 관계를 통한 효율적인 감사의 수행을 기하고 있다.

협회 또한 「규약」 제47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에 따라 협회의 조직 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협회에 대한 본회의 감사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등)에 따라 수감자료인 기록물은 전자적 관리 및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본회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24.4.30 ~ 5.3로 총 5일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수감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여 `24.5.7 ~ 5.10까지 연장하여 총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감자료를 제출하면서 원본을 보관(기록물)하고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사본을 출력해서 제출하는 등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보조금 집행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 대부분이 제대로 수집되어 있지 않았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장은

정기종합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심도 깊은 반성과 향후 정기종합감사에 동일한 사항이 발생시 협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불이익과 개인의 일신상의 처분이 주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기 바라며, 기록물 관리를 위해 문서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모든 기록물을 전자로 관리하고 본회 전자문서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 조치결과를 본회 공정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 「감사규정」 제15조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사자료 및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단체 및 부서는 이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일련번호: 2]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대의원 겸직 및 총회 구성 위반

[소 속 기 관]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의원총회 관련 그 구성과 절차에 대하여도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용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규약」 제7조 제1항에서는 제1호 및 제2호를 통해 동 규약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군 세팍타크로협회의 장’과 제5조 제3항에 따른 ‘경기도 규모연맹체의 장’이 협회의 대의원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데, 동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의원의 구성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총회 구성의 공백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 제8항¹⁾과 본회 「경기도종목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⑧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단체규정」 제7조 제8항²⁾에서는 임원과 대의원(대의원의 대리인 포함)의 중복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협회 규약에서는 이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동 사항에 대한 적용과 해석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총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가. 총회 구성 절차 위반

협회는 20**년부터 20**년까지 3차례의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고, 규약 제7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군세팍타크로협회의 장 등으로는 7인 이상의 구성이 곤란하여 같은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협회의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하였다.

위와 같이 총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규약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그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협회는 해당사유가 있을 경우 ‘체육회(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에서 제출한 정기종합감사 수감자료에 따르면 20**년, 20**년 아래 표와 같이 각 7명의 대의원을 구성, 본회에 승인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23년도의 경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대의원을 구성에 대한 본회의 승인절차가 확인되지 않았다.³⁾ (협회의 승인 요청 공문 및 본회의 승인 문서 부존재)

2)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⑧ 도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3) 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참석서명부에는 ‘의장’을 제외한 다시 참석한 대의원 4명(이기○, 김동○, 정연○, 이대○)이 서명을 하였는데, 그 소속직위를 보면 도내 시군 직장팀 지도자, 동호인 대표, 도내 학교팀 지도자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규약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협회 대의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제3호에 따른 총회 구성으로 판단됨.

[표1] 협회 연도별 대의원 구성 승인 요청 현황

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비 고
1	박00	고양시협회장	박00	고양시협회장	-	'23년도 대의원구성 승인근거 자료 없음.
2	홍00	김포시협회장	홍00	김포시협회장		
3	김00	고양시협회 동호인대표	김00	고양시협회 동호인대표		
4	임00	고양시청 지도자	이00	고양시청 시장		
5	김00	저동고 교장	한00	경희대 총장		
6	서00	풍무고 교장	김00	저동고 교장		
7	오00	태원고 교장	서00	풍무고 교장		

따라서 20**년도의 경우 협회 규약 제7조 제1항 제3호의 총회 구성 절차가 위반되어 그 구성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정기대의원총회의 안건 또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나. 임원과 대의원의 겸직 위반

협회는 20**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의장을 제외한 4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는데, 4명중 3명의 대의원이 임원과 중복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정○○, 이○○ 이상 3명)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 제4항 및 제5항⁴⁾에서는 시도종목단체의 장 등 대의원수가 9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으나, 동 규정 제8항⁵⁾에 따라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4)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9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수가 9명 미만인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

5)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⑧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제7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조 제8항을 두어 그 구성과 임원 및 대의원의 중복을 제한하고 있다.

협회 규약은 제7조 제1항 제3호에 총회 구성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만, 임원과 대의원의 중복금지여부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동 사항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4조⁶⁾에 따라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이 협회 규약보다 우선하며, 도종목단체 규약과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이 상이할 경우 본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협회 임원과 대의원은 구분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회장은

○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을 준용하여 절차에 따라 조속히 규약을 개정하고, 향후 총회의 대의원 구성시 절차 준수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임원과 중복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시어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6)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4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도종목단체 규약에 우선하며, 도종목단체 규약을 이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도종목단체의 규약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도종목단체가 본회의 정관, 이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일련번호: 3]

경기도체육회

주의·시정조치

[제 목] 각종 위원회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규정」(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종목운동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체력을 향상케 하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규약 제4조의 각종 사업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써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와 그 구성 등에 대하여 규약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규약 제37조부터 제39조의 조항을 두어 각종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규약 제37조는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정의하고 있고,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하도록 하여 설치 근거와 절차를 동 조항에 명시하였다. 특히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를 통해 각종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인의 각종 사업에 대한 관여 방지 및 의결 사항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규약 제37조 제6항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기관의 해당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별도로 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제개정시에는 규약 제53조 및 협회 스포츠평정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각종 규정 제개정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규약 제37조부터 제39조의 조항을 두어 각종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본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기종합감사 수감자료」에 의하면 협회는 현재 2개(스포츠공정위원회, 우수지도자 선정위원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는 규약 및 관련 제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가. 위원회 위원 겸임 금지조항 위반

규약 제3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7조 제4항¹⁾ 또한 해당 조항과 동일하게 위원의 다른 위원회 위원 겸임을 제한하고 있다.

협회에서 제출한 수감자료에 의하면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스포츠평정위원회 위원 7명, 우수지도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6명으로 구성하였다.

[표2] 위원회별 위원 구성 현황

구 분	위원 구성 현황	비 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신○○, 정○○, 이○○, 장○○, 서○○, 조○○, 이○○	7명
우수지도자 선정위원회	이○○, 이○○, 신○○, 조○○, 이○○, 최○○	6명

1)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위 표에서와 같이 2개의 위원회 위원중 1명(신○○)의 경우 양 위원회를 겸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위원의 다른위원회의 겸임의 제한규정을 위배한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향후 구성과 관련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나. 위원회 운영 규정 미설치

규약 제37조 제6항에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기관의 해당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별도로 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나, 그 외 ‘선정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운영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금번 본회에 제출한 협회의 수감자료에 따른 2022년과 2023년도 각각 한차례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수지도자 체육보상금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선정한 바 있다.

[표3] 선정위원회 개최 및 의결 현황

구 분	개최일자	선정(참석)위원	비 고
2022년도	'22.*.**	(5명) 이○○, 조○○, 임○○, 이○○, 최○○	6명중 5명 참석
2023년도	'23.*.**	(4명) 이○○, 조○○, 최○○, 이○○	6명중 4명 참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위원회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이 보통이나 동 선정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정수, 기능,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조항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의결사항에 대한 유효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향후 각종 민원 및 법적 쟁송 대상이 될 문제 소지 발생이 존재한다 판단되는 바, 협회는 의결사항에 대한 적법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다. 규정개정 절차 위반

협회는 20** . * . ** .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제정하였고, 동년 * . ** . 한차례의 개정을 통해 現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규약 제53조에 따르면 협회는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에 따라 협회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규약 외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3조²⁾에서도 같은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각호를 통해 나열하고 있는데, ‘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에 관한 사항’이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어, 협회 규약을 포함한 제규정의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득한 후 이사회의 의결 또는 총회를 거쳐야 함이 타당하다.

위 규정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20**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수감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에, 규정 개정 절차 하자에 따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향후 협회는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규약 및 관련 규정 절차에 따른 규정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① 도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도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한다.

③ “생략”

[조 치 사 항]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회장은

- 협회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및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그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주의)
- 위원회 위원 겸직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 구성에 대한 조정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또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제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절차 준수여부 증빙과 함께(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이사회 의결) 본회 공정 감사실로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사무국 운영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라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각 호를 통하여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동 조항을 기반으로 하여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여야 하고 협회규약 및 제규정에 기초하여 단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규약」 제49조(사무국)에 근거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사무국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 및 자격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0조를 별도로 두어 협회의 사무국 운영에 대한 필요 사항들에 대하여 본회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0조³⁾ 또한

3) 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도종목단체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라. “생략”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종목단체 사무국운영시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그 필요 사항들에 대하여는 동조 각 호를 통하여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사무국 운영시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관련 규정 및 지침등을 제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협회는 「규약」외 별도의 규정 및 지침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협회 「규약」 제50조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0조는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본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제정 없이 본회 관련 규정의 준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협회의 경우 규약이 제정된 2016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금번 정기종합감사시 본회에 제출한 규정이 협회 「규약」 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장기간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그 기준성과 체계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회장은

○ 협회 「규약」 및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에 의거, 조속히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등(인사 및 복무, 회계규정, 문서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그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 제정사항에 대하여는 절차 완료 후 증빙자료(이사회 심의자료 등)와 함께 본회 공정감사실로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규약 및 기타규정 관리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개정하여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 「규약」 제6조(권리와 의무) 및 제53조(규정 제·개정)에 따르면 협회는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¹⁾ 및 제53조²⁾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협회 규약의 미현행화

본회는 경기도종목단체의 조직운영에 필수요소인 규약 개정을 독려

- 1)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2조(규약변경) ① 도종목단체가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도종목단체의 승인에 앞서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 2)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① 도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도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 한다.
③ 도종목단체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하기 위해 본회 정관 및 제규정 사항에 대해 안내³⁾하여 경기도종목 단체의 규약 및 제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각 단체 운영에 규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20**년도 *월 규약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규약에 대한 현행화(최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상위기관과 해석 및 적용에 오류발생이 우려되며, 기타 제규정을 통해 각종 사업 및 사무국 운영상에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문서관리 규정, 민원처리 규정,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등 기타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협회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판단된다.

나. 협회 각종 위원회 규정 미제정

협회는 규약 제37조부터 제39조⁴⁾를 두어 각종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의 경우 위원회의 설치근거, 위원회 겸임금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자격,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그 운영에 기본적인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제39조 제3항에서는 본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또한 제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협회는 규약 및 본회 규정에 따라 협회의 규약을 개정하고 협회의 사업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규정을 제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3) 본회 종목육성팀-8(2023.1.2.)호 및 종목육성팀-47(2024.1.9.)호

4) 협회 「규약」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조 치 사 항]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장은

규약을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및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정관 등을 참고하여 종목의 특성에 맞는 규약을 절차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및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사업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처리 절차가 있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사업별 지침 및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경기도 회계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제3항⁵⁾에 의거, 2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훈령* 별지 제40호서식, 제40의1호서식, 제41호서식 또는 제41의1호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서는 계약 담당자가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5)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계약의 체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 서식, 제40의 1호서식, 제41호서식 또는 제41의 1호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훈령 별표 4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 방지법”라 한다.)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지방회계법」(이하 “지방회계법”이라 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회계처리가 신뢰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사업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고 계약절차를 무시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 절차를 부적절하게 운영 하였다.

[표1]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계약 및 분할 구매 내역

사업명	구분	지출내역	금액	업체명
2021 ****	분할지출	마스크	*,***,000	바*****
		체온계	***,000	D*****

협회는 [표1]과 같이 「2021 ****」 보조사업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특수상황과 '21년 11월 사업을 감안하더라도 지출내역이 같은 방역용품에도 불구하고 분할하여 지출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계약서 체결 및 검수사진 등 계약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2022 ****」 보조사업에서 협회 내부 직원(단기 일자리 채용)이 운영하고 있는 특정업체에서 방역용품을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계약절차를 이행 하지 않아 사전 계약 협정 및 담합 등 특정 업체를 신뢰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표2]와 같이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을 집행

할 경우 객관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통해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나 `21~23년도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증빙서류가 누락된 채 지출하는 등 회계처리 절차를 확인하기 어렵다.

[표2] 증빙서류 관리 미흡 현황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	부실 증빙내역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사업전반	-	지출품의, 지출결의
2021 **** *	숙식비	2,700,000	결의서, 품의서, 식사증빙 사진 등
2021 **** **	사업전반	-	결의서, 품의서, 비교견적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증빙사진 등
2022 **** ***	운영비	3,006,700	결의서, 증빙사진,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누락 등
2022 **** ****	사업전반	-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증빙사진 누락 등
2023 **** **	인건비, 운영비, 장비 등	-	입금증, 심판자격증, 통장사본,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누락 등
2023 ****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	식사명단, 숙박명단, 숙박명세서, 통장사본 등
2023 **** *****	용품구입비	35,000,000	품의서, 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설설치 단체확인서, 물품지급수령증 등

[조 치 사 항]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장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체육회 회계규정 등을 근거로 청렴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약 및 회계처리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 관리에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라며, 보조사업 전반적으로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21년~'23년 보조 사업 전체의 지출증빙을 전면검토하여 부족한 서류의 보강을 실시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회계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실

[소 속 기 관]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규정」(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고, 동 규약 제40조 부터 제48조까지 재산 및 회계 관련 조항을 두어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항은 회계관계 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⁶⁾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부여와 그 위반하는 회계 관계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계규정」 제11조⁷⁾ 또한

6)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략”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4. “생략”

7) 체육회 「회계규정」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 등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회계관계직원’ 등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지방회계법」 제50조 제1항과 동일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현재 회계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아 회계관계직원에게 대한 구분 및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회계재정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세팍타크로협회 회장은

체육회 「회계규정」을 준용하는 등 협회 운영과 관련한 회계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에 따른 회계담당의 범위를 구분·지정하시고, 회계관계직원에게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필히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